정산 및 결제 절차

1. 목적

규칙 제4.3.9조, 제12장 제6절, 제14장 제5절 및 제18장 제6절의 규정에 의거 전력거래 정산 및 결제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여 원활한 전력시장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개정 2014.11.3.]<개정 2020.10.1., 2024.10.8.>

2 적용범위

본 별표는 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한 전력거래 결과의 정산, 결제, 거래관련 내역통지,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 등 제반업무 처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 다.

3. 책임

- 3.1 전력거래소이사장
 - 전력거래 정산, 결제업무, 수수료 등 정산 및 결제관련 업무 처리를 공정하고 정확히 처리되도록 총괄 관리한다.
- 3.2 정산담당자

전력거래 정산, 정산조정업무, 정산명세서 및 통지서 송부, 정산관련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며 이의조정회의를 주관 하다.

- 3.3 결제담당자
 - 전력거래대금 청구서, 청구요청서 발행 등 결제관련 업무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며 시장은행 이체지시, 결제관련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한다.
- 3.4 계통운영담당자

실전력계통을 안정되고 신뢰성 있게 유지하며 급전지시내용 및 정산에 영향을 주는 계통운영 결과를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에게 통지한다.

- 3.5 거래담당자
 - 전력시장 참여회원의 전력거래의 주된 담당자로서 전력거래소 정산 및 결제담당자의 전력거래관련 사실 확인에 최대한 협조하며, 이의조정회의에 참여하여정산 및 결제업무 관련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 3.6 이의신청자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의제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고,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전력거래소의 필요한 사실확인에 협조한다.₩

4. 참고자료

- 4.1 법 제31조,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2 조<개정 2020.10.1.>
- 4.2 전력거래소 정관

5. 용어의 정의

5.1 고장정지

발전기 자체 고장에 의해 발전기를 수동으로 정지하거나 보호장치에 의해 발전기가 자동으로 긴급히 정지되는 것

- 5.2 파급정지
 - 발전기 자체는 운전이 가능하나 외부의 계통동요 또는 전력계통 제약에 의해 발전기를 정지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에서 인정한 것
- 5.3 출력 급감소 발전기를 입찰 공급가능용량 및 출력감소율과 다르게 긴급히 출력감소하 는 것
- 5.4 정산조정 정산명세서 발행전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정산에 대하여 규칙 및 관련 절차의 기준과 다르게 정산 입력되어 산정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작업
- 5.5 정산명세서 전력거래 정산결과를 관련 회원에게 통지할 목적으로 정산금액 산정내역 을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
- 5.6 청구서

전력시장에 참여한 회원, 분산에너지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간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내역별로 기재한 것으로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말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관한 청구서는 별지 제104-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04.11.30., 2014.11.3., 2022.5.31., 2024.2.13., 2024.8.1., 2025.4.9., 2025.7.10.>

5.7 청구요청서

전력시장에 참여한 회원, 분산에너지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청구할 금액을 내역별로 기재한 것으로서 별지 제41호서식을 말하며, 회원의 청구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관한 청구요청서는 별지 제104-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04.11.30., 2014.11.3. 2022.5.31., 2024.8.1., 2025.4.9., 2025.7.10.>

5.8 지급보증서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와 관련된 결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지 못할 때 전력거래소가 직접구매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미결제금액을 대신 변제토록 청구할 수 있는 약속증서로서 직접구매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제공한 한국은행의 신용관리하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보증서를 말하며 본 지급보증서에는 전력거래소가 산출하여 고지한 재정보증금액 이상의 금액이 보증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개정 2005.1.21.>

5.9 조정신청

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한 초기정산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여 본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행위

- 5.10 이의신청
 - 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한 최종정산 및 전력거래대금 결제에 관련 의견을 달 리하여 본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 5.11 이의신청합의 이의신청자가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하여 전력거래소 정산 및 결제담당자 가 유효성을 확인하고 거래참여자간 적합성을 인정하여 이의사항에 대해
- 5.12 접수불가

협의·조정·합의한 것

- 이의신청자가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하여 전력거래소 정산 및 결제담당자 가 유효성을 확인하여 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의신청
- 5.13 이의조정회의 이의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된 회원의 거래참여자간에 상호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전력거래소 정산 및 결제담당자가 주관한 이의조정 회의
- 5.14 합의불가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관련 회원간 협의·조정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 5.15 정산기록 전력거래 정산 및 결제에 수행된 활동이나 실현된 결과의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는 무서
- 5.16 전력거래수수료 전력거래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충당을 위해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 수요 관리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개정 2005.1.21., 2014.11.3., 2025.4.9., 2025.7.10.>

- 5.17 결제수수료 <삭제 2010.11.30.>
- 5.18 <항번호변경 2003.5.7.>.<삭제 2025.4.9.>
- 5.19 전력산업기반기금<항번호변경 2003.5.7.>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법 제51조(부담금)에서 정하는 전력거래대금의 1천분의 65범위 안에서 직접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 5.20 시장은행<항번호변경 2003.5.7.> 전력거래에 참여한 회원의 자금이체, 거래대금 결제 및 이를 위한 설비를 유 지, 보수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지정한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 5.21 정산계좌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중개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와 관련된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이체받기 위한 각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회원사로부터 전력거래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정·신고한 계좌. 단, 정산계좌는 시장은행에 개설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시장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정산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당사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3.5.7, 2005.1.21., 2009.06.30., 2014.11.3., 2017.12.29., 2020.10.1., 2025.7.10.>
 - 1. 2MW 이하의 설비를 소유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정산계좌 [신설 2017.12.29.]
 - 2. 회원사로부터 전력거래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지정·신고한 정산계좌 [신설 2017.12.29.]
- 5.22 결제계좌 <항번호변경 2003.5.7.> 전력거래에 참여한 회원의 전력거래와 관련된 결제금액을 이체하기 위하여 시장은행에 설정된 전력거래소 명의의 은행계좌
- 5.23 정산 및 결제일정표<항번호변경 2003.5.7.>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 참여 회원간에 협의에 의하여 작성된 표로써 당해 연도 정산명세서, 통지서, 청구서 송부일자 및 결제일자를 규정한 일정표
- 5.24 발전소 접속설비의 불가항력적 고장[신설 2004.7.9.] 송전사업자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유지보수기준 등 통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송변전 설비를 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로 발전소 접속설비가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송전사업자가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의 발전소 접속설비에 고장을 초래한 자연현상중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풍랑, 해일, 낙뢰, 산불(접속설비 결함에 의한 산불 또는 외물접촉

에 따른 사고에 의한 산불은 제외)<개정 2011.6.30.> 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초과하는 바람, 빙설

- 5.25 발전소 접속설비[신설 2004.7.9.] 송전망중 발전소 발전력을 전력계통에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와 기설·신설 송변전설비간에 설치된 장치 및 관련설비를 말한다. 다만, 송전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에 발전소 접속설비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계약상의 설비로 한정한다.
- 5.26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신설 2023.8.30.] 수소발전입찰시장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충당을 위해 「수소경제 육 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7 제3항에 의거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6. 적용지침

- 6.1 제4장 제2절 및 제3절, 제14장 제5절, 제18장 제6절 <개정 2020.10.1., 2024.10.8.>
- 6.2 법 제31조,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개정 2020.10.1.>

7.0 절차

- 7.1 발전전력량, 정산 및 결제금액의 단수·소수점 처리 등
- 7.1.1 한계가격, 정산상한가격, 긴급정산상한가격, 발전가격, 용량가격, 최고발전가격(MGP), 수요반응자원 순편익가격(NBTP), 감축가격(RP),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단가(UPR), 분산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 부가정산금단가(UPD), 월별최종계약가격(MFP)은 [원/kWh]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단, 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은고정가격의 1,000분의1인 [원/kWh]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3.2.28., 2014.11.3., 2022.5.31., 2022.11.30., 2022.12.27., 2023.8.30., 2024.2.28., 2025.7.10.>
- 7.1.2 발전전력량(MGO), 유효구매전력량, 전력펌핑사용전력량(SD), 직접전력거 래 초과발전량(EEC), 직접전력거래 거래량(TRS), 직접전력거래 공급량 (SRS), 직접전력거래 공급량 조정값(ASRS), 전기사용자 직접전력거래 공급량(SRC), 판매사업자 계약체결 전력량(TESC), 정산대상전력량(SOG)은 MWh를 기준으로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거래시간별로 반올림 처리한다.(Wh까지 계산) <개정 2021.12.28., 2022.5.31., 2023.8.30.>
- 7.1.3 각 거래시간의 가격요소별 정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단 위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6.9.14.>

- 7.1.4 전력거래대금, 예측제도정산금,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전력거래수수 료,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단수처리는 국고단수계 산법에 따라 청구금액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3.5.7, 2006.9.14., 2010.11.30.,2020.10.1., 2023.8.30., 2024.2.28., 2025.4.9.>
- 7.1.5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ORC),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감축계획량 (SSR),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SR),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DR),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증대계획량(SLI),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전력부하증대량(SI), 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전력부하증대량(DI),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FR), 국민DR 고객기준부하(CBL), 국민DR 사용전력량(ME)은 MWh를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거래시간별로 반올림 처리한다.(kWh까지 계산) [신설 2014.11.3.] <개정 2019.11.07., 2019.12.31., 2020.11.01., 2021.1.1., 2021.9.18., 2022.12.27., 2024.3.28.>
- 7.1.6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력부하감축량(CLR), 전력부하증대량(CLI), 고객기준부하(CBL) 및 사용전력량(ME)은 MWh를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거래시간 별로 반올림 처리한다.(kWh까지 계산) [신설 2014.11.3.] <개정 2021.1.1.>
- 7.1.7 예측제도 참여자의 대상자원에 대한 시간대별 오차율(FER), 예측제도 참여자의 대상자원 중 주요자원에 대한 시간대별 설비이용률(CFM)은 [%]단위로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신설 2020.10.1.] <개정 2021.9.18.>
- 7.1.8 예측제도 참여자의 대상자원 중 주요자원의 설비용량(ICM)은 MW를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kW까지 계산) [신설 2020.10.1.] <개정 2021.9.18.>
- 7.1.9 예측제도 참여자의 대상자원 중 주요자원의 예측발전량(FGM) 및 전력거 대량(MGOM)과 보조자원 예측발전량(FGA) 및 전력거대량(MGOA)은 MWh를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kWh까지 계산) [신설 2020.10.1.] <개정 2021.9.18.>
- 7.1.10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60분 평균 EMS급전지시량(SET_POINT_{i,t})는 MW를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거래시간별로 반올림 처리한다. [신설 2023.8.30.]
- 7.1.11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의 하루전에너지가격, 실시간에너지가격, 임시실시간에너지가격, 실시간예비력가격, 임시실시간예비력가격, 실시간예비력기회비용 및 별표33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대한 정산기준의에너지거래가격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24.2.28.]
- 7.1.12 준중앙급전발전기의 최대발전용량(MGC_i), 최소발전용량(MG_i), 시간대별

자체발전계획량($SSG_{i,t}$) 및 시간대별 급전지시량($TGSO_{i,t}$)은 MW를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kW까지 계산) [신설 2024.10.8.]

- 7.1.13 준중앙급전발전기의 시간대별 하향운전 급전지시 이행률(DGR_{i,t}), 상향운 전 급전지시 이행률(UGR_{i,t}) 및 급전지시 평균 이행률(AGR_{i,t})은 [%] 단위로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단, 유연성기여도(FCR_i)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신설 2024.10.8.]
- 7.1.14 분산에너지사업자 발전기의 초과발전량,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량,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간대별 공급량은 MWh를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kWh까지 계산) [신설 2025.7.10.]
- 7.2 전력거래시스템 및 정산자료 입력 오류·착오에 대한 정산
- 7.2.1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시스템 장애 또는 유효한 입찰 누락·착오 등에 의하여 비정상적 거래결과로 정산된 경우 유효한 입력을 하루전발전계획에 재반영하고 계량전력량에 따라 재정산한다 <개정 2021.1.1.>
- 7.2.2 입찰 및 계량, 예측제도 참여자의 예측발전량 제출, 정산자료 전체에 대한 시스템 오류시에 전력거래소는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며, 시스템 복구 즉시 정상 입찰자료 및 제출된 예측발전량을 재반영하여 최종정산 마감일 이전에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최종정산 마감일 이전까지 복구되지 않을시 초기정산을 수행한 경우 초기정산결과로 가정산하고 초기정산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전력거래소에서 향후 정산금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가능한 정산방법을 선정하여 가정산한다. 시스템이 복구된 후 즉시 차액에 대하여 최종정산한다.<개정 2020.10.1.>
- 7.2.3 제16장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주계통에 대하여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 시스템 장애 또는 유효한 입찰 누락·착오 등에 의하여 비정상적 거래결과로 정산된 경우 유효한 입력을 하루전발전계획 및 실시간발전계획에 재반영하여 발전계획량, 예비력계획량 및 하루전에너지가격, 실시간에너지가격, 실시간예비력가격을 산출하고 계량전력량에 따라 재정산한다. 단, 제16.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실시간시장입찰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입찰자료에 대해서는 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8.30.]
- 7.3 정산을 위한 사전조정
- 7.3.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정산된 결과를 정산조정확인용 내역서로 자체 검토하여 정산명세서 발행 전 명백한 정산기준 적용 오류나 입력 착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정산조정한다.
- 7.3.2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조정작업시 전력계통 운용결과를 근거로 발전기 자체 사유에 의한 발전전력량과 고장정지, 파급정지, 출력 급감소 원인,

발전소 접속설비의 불가항력적 고장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을 위한 사전조정을 한다. 다만, 발전소 접속설비의 불가항력적 고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파급정지로 조정한다.<개정 2004.7.9.>

- 7.3.2.1 발전기의 정비·고장, 자체사유 기동·정지 등 발전회사 사유로 입찰한 전력 량대로 발전이 불가능함에도 변경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 정산기준에 따라 실제 공급가능량을 확인하여 입찰량을 조정한다.[신설 2010.6.30.]
- 7.3.2.2 발전회원은 별표 4 제6.3.10조에 의한 비상대기예비력 입찰시 발전기 계획정지 및 비계획정지 등으로 비상대기예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기예비력 입찰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정산명세서 발행전 계획정지, 고장정지, 파급정지, 출력 급감소 원인, 발전소 접속설비의 불가항력적 고장 등을 확인하여 정산기준에 따라 비상대기예비력을 사전조정을 한다.[신설2020.12.1.]
- 7.3.3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정산조정 과정에서 필요시 관련된 회원의 거래 담당자와 협의·조정하며 해당 회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7.3.4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별표 2에 의거 산정한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금을 각 시간대별로 배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항목에 대해 사전 조정하여 정산명세서를 발행한다.[신설 2007.12.27.]
 - 1. 기동비용정산금, 기동대기발전기정산금은 실제 기동 및 기동대기시간에 지급
 - 2. 시운전발전량정산금, 수력·양수발전기의 계획발전전력량정산금, 제약발전전력량정산금은 실제 발전 시간대에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급
 - 3. 양수발전기의 제약비발전전력량정산금은 발전입찰량을 기준으로 지급 <개정 2021.1.1.>
 - 4. 자체기동서비스 정산금, 예방정비 일정변경에 따른 추가용량정산금은 1일 정산금을 24거래시간에 균등배분하여 지급
- 7.3.5 발전사업자의 예방정비 계획은 규칙 제5.9.2조에 의하여 전년도 4월말까지 제출한 최종 발전기 정지 일정을 말하며,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정지계획을 변경할 시는 변경된 일정을 적용한다.[신설 2008.10.31.]<개정 2015.3.17.>
- 7.3.6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계획예방정비계획 조정으로 인한 추가용량정산금(ACP) 산정에 필요한 예방정비 시작시간과 완료시간을 거 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0.31.]
- 7.3.6.1 예방정비 시작시간은 예방정비 시작일 익일까지(익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근무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0.31.]
- 7.3.6.2 예방정비 완료시간은 예방정비 완료일 익일까지(익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

- 음 첫 근무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0.31.]
- 7.3.7 예방정비 일정 조정시간은 시간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한다.[신설 2008.10.31.]
- 7.3.8 예방정비 일정 변경에 대한 정산금 지급에 명시된 일반발전기라 함은 조합발전기를 제외한 발전기를 말한다.[신설 2008.10.31.]
- 7.3.9 조합발전기(복합발전기 및 수력발전기 등) 중 일부 발전기가 정비를 한경우에 해당 발전기가 전년도 예방정비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의 설비용량대비 공급가능용량 입찰률(PRAFi)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신설2008.10.31.]
- 7.3.10 2대 이상의 가스터빈발전기와 스팀터빈발전기가 하나의 발전기로 구성된 복합발전기의 가스터빈발전기 예방정비로 인하여 출력감소된 발전용량 산정 시 스팀터빈발전기의 출력감소용량은 가스터빈발전기 설비용량의 반 으로 한다.[신설 2008.10.31.]
- 7.3.11 예방정비발전기의 설비용량은 비용위원회에서 정한 설비용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발전기는 개별 발전기의 설비용량의 경우 기타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신설 2008.10.31.]
- 7.4 초기정산명세서 확인 및 발행
- 7.4.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정산처리 계량체크리스트, 초기정산조정 확인용 내역서의 주요사항을 확인한다.
- 7.4.2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거래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 14:00까지 중앙급 전발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의 거래시간대별로 취득된 계량전력량에 따른 전력거래량을 포함하여 거래일로부터 6일이내 초기정산을 시행하고 이상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거래일로부터 9일이내 해당 회원에게 제7.6 항의 절차에 따라 통지하고, 제7.7항에 따라 초기정산명세서를 발행한다.
- 7.4.3 수요반응자원을 통한 전력거래에 대해서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거래 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31일이내 초기정산을 시행하고 이상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거래일로부터 33일이내 해당 회원에게 제7.6항의절차에 따라 통지하고, 제7.7항에 따라 초기정산명세서를 발행한다. [신설 2014.11.3.]
- 7.5 최종정산명세서 확인 및 발행
- 7.5.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제7.13항에 따라 초기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처리결과가 정확히 최종정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7.5.2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거래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 14:00까지 중앙급 전발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의 거래시간별로 취득된 계량전력량에 따 른 전력거래량을 포함하여 거래일로부터 17일 이내 최종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거래일로부터 19일 이내 해당 회원에게 최종정산명세서를 발행한다. <개정 2019.12.13.>

- 7.5.3 수요반응자원을 통한 전력거래에 대해서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거래일 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거래일로부터 47일 이내 해당 회원에게 최종정산명세서를 발행한다. [신설 2014.11.3.]
- 7.6 초기, 최종정산명세서 발송
- 7.6.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전력거래 해당회원의 전력거래담당자가전력거래 내역을 판단할 수 있는 초기·최종정산명세서를 엑셀화일로 송부하며 정산 명세서에 포함할 세부항목 및 범위는 정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7.6.1.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해당 회원의 초기·최종정산명세서를 발송일 17:00까지 송부한다.
- 7.6.1.2 7.6.1.1의 초기,최종정산명세서 발송일자는 7.12 규정에 따른다.
- 7.6.1.3 초기, 최종정산명세서 발송방법은 7.10 규정에 따른다.
- 7.6.1.4 각 회원의 거래담당자는 전력거래시스템 및 정산 입력오류·착오 또는 초 기정산을 위한 사전조정에 대하여 내역제공을 요청할 경우 해당 회원의 내역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 7.7 초기, 최종정산금통지서 발송
- 7.7.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각 회원에게 전력거래량, 전력량정산금 등을 기재한 별지 제39호 서식의 초기·최종정산금통지서를 발송한다. 단,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초기·최종정산금통지서는 별지 제103호 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04.11.30., 2014.11.3.>
- 7.7.1.1 <삭제 2006.12.26.>
- 7.7.2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정산금통지서 발행번호를 부여한다.

 - · 처음 3자리 : KPX(전력거래소)
 - · 다음 3자리

ISN: Initial Settlement Notice(초기정산금통지서)

FSN: Final Settlement Notice(최종정산금통지서)

- · 다음 8자리 : 20010102 (전력거래기준 년, 월, 일)
- · 다음 2자리 : 회원 코드

01 : 수력원자력, 02 : 남동, 03 : 중부, 04 : 서부, 05 : 남부,

06 : 동서, 07 : 한국수자원, 08 : 한전, 10~99 : 기타

- · 통지서 발행대상 회원수가 증가할 경우 회원 코드 추가부여
- 7.7.2.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산금통지서 발행번호를 부여한다. [신설 2014.11.3.]

- · 처음 3자리 : KPX(전력거래소)
- · 다음 3자리

IDN: Initial DR Settlement Notice(초기정산금통지서) FDN: Final DR Settlement Notice(최종정산금통지서) · 다음 8자리: 20010102 (전력거래기준 년, 월, 일)

- · 다음 2자리 : 회원 코드
- 7.7.3 초기, 최종정산금통지서 발송방법은 7.10 규정에 따른다.
- 7.7.4 초기,최종정산금통지서 발송일자는 7.12 규정에 따른다.
- 7.8 전력거래수수료 및 연회비 내역 통지 <개정 2010.11.30., 2025.4.9.>
- 7.8.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전력거래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각 회원의 거래 전력량에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 단, 수 요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력부하감축거래량 또는 전력부하증대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제공하는 초과발전거래량 및 분산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3., 2021.1.1., 2022.5.31., 2025.4.9., 2025.7.10.>
- 7.8.1.1 <삭제 2025.4.9.>
- 7.8.1.2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대상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는 정산대상 전력량에 전력거래소가 별도 로 정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3.8.30.]
- 7.8.1.3 초과발전량, 부족전력량, 공급량 등 제3자간 전력거래에 관한 정보는 직접 전력거래와 동일한 시스템 및 산정 방식으로 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시스템 사용 등에 따른 수수료는 직접전력거래에서 부과되는 전력거래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판매사업자에게 청구한다.[신설 2024.2.13.]
- 7.8.2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전력거래에 참여한 각 회원에게 해당 거래일의 전력거래수수료 및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내역을 최종정산금 통지일과 동일하게 최종정산금통지서로 통지하며 7.9 규정에 의하여 거래차수별 청구서에 수수료 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한다. <개정 2023.8.30., 2025.4.9.>
- 7.8.3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및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수수방법은 7.9(청구서 송부), 7.11(전력거래대금결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1.30., 2023.8.30., 2025.4.9.>
- 7.9 전력거래대금 청구 및 청구요청서 발송
- 7.9.1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전력거래대금
- 7.9.1.1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전력

거래와 관련된 결제금액 내역을 기재하여 각 차수별 결제일 기준 5일전까지 해당회원에게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104-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송한다.<개정 2004.11.30., 2012.12.31., 2014.11.3., 2019.12.13., 2024.8.1.>

- 7.9.1.1.1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등이 지급받아야 할 수요반응자원의 위약금과 관련된 결제금액 내역을 기재하여 각 차수별 결제일 기준 5일전까지 해당회원에게 별지 제104-2호서식에 의한 청구요 청서를 발송한다. [신설 2014.11.3.] <개정 2019.12.13., 2024.8.1.>
- 7.9.1.1.2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등은 7.9.1.2.1의 청구요청서를 근거로 거래 차수별 결제일 4일전까지 전력거래 결제금액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서 서식은 별지104호 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3.] <개정 2019.12.13.>
- 7.9.1.2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판매사업자가 판매한 양수동력정산금 및 직접구매자가 지급할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에 대해서 각 차수별 결제일 기준 5일전까지 해당회원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청구요청서를 발송한다. <개정 2004.11.30., 2019.12.13., 2025.4.9.>
- 7.9.1.3 판매사업자는 7.9.1.2에서 규정한 청구요청서를 근거로 거래차수별 결제일 4일전까지 전력거래 결제금액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서 서식은 별지 제40호서식을 준용한다.<개정 2004.11.30., 2019.12.13.>
- 7.9.1.4 판매사업자가 결제금액 청구시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4.11.30., 2012.12.31>
- 7.9.1.5 청구서 및 청구요청서 발송방법은 7.10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4.11.30.>
- 7.9.1.6 청구서 및 청구요청서 발송일자는 7.12 규정에 의한 정산 및 결제일정표에 의한다. <개정 2004.11.30.>
- 7.9.2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예측제도 참여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 전력거 래대금 <개정 2014.11.3., 2020.10.1., 2025.7.10.>
- 7.9.2.1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예측제도 참여자가 지급받아야 할 전력거래와 관련된 결제금액 내역을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105호서식에 의하여 각 거래차수별 결제일 기준 5일전까지 발송한다.<개정 2004.11.30., 2014.11.3., 2019.12.13., 2020.10.1., 2025.7.10.>
- 7.9.2.2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예측제도 참여자는 7.9.2.1에서 규정한 청구요청서를 근거로 거래차수별 결제일 4일전까지 전력거래 대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해야 한며, 청구서 서식은별지 제40호서식및 제104호 서식을 준용한다<개정 2004.11.30., 2014.11.3., 2020.10.1., 2025.7.10.>

- 7.9.2.3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예측제도 참여자가 전력 거래대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개정 2004.11.30., 2012.12.31., 2014.11.3., 2020.10.1., 2025.7.10.>
- 7.9.2.4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발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수동력정산금, 전력부하증대거래량 정산금, 수수료 등의 전력거래대금 내역에 대해 별지 제 40호서식 및 제104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전사업자에 게 발송한다. <개정 2004.11.30., 2012.12.31., 2021.1.1.>
- 7.9.2.5 청구서 및 청구요청서 발송방법은 7.10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4.11.30.>
- 7.9.2.6 청구서 및 청구요청서 발송일자는 7.12 규정에 의한 정산 및 결제일정표에 의한다.<개정 2004.11.30.>
- 7.9.2.7 발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수동력정산금, 충전전력량 정산금, 전력부하 증대거래량 정산금,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및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결제금액은 전력거래소가 별지 제40호서식 및 제104호서식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개정 2010.11.30., 2016.5.12., 2021.1.1.>
- 7.9.2.8 수요관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및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금액은 전력거래소가 별지 제104-1호서식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신설 2014.11.3.] <개 정 2024.8.1.>
- 7.9.2.9 중개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연회비 등 결제금액은 전력거래소가 별지 제 40호서식에 따라 중개사업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신설 2020.10.1.]
- 7.9.2.10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전력 직접거래 수수료, 부가정산금 등이에 상응하는 결제금액은 전력거래소가 별지 제40호 및 제40-1호 서식에따라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신설 2025.7.10.]
- 7.9.3 전력거래대금 청구의 간주[신설 2008.10.31.]
- 7.9.3.1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예측제도 참여자가 7.9.1.3, 7.9.1.3.1 및 7.9.2.2의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9.1.2, 7.9.1.2.1 및 7.9.2.1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발송한 청구요청서로써 청구서를 갈음한다. <개정 2014.11.3., 2020.10.1., 2025.7.10.>
- 7.9.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신설 2013.10.1.]
- 7.9.4.1 전력거래소와 회원사가 7.9.1.1 및 7.9.1.4, 7.9.2.3, 7.9.2.4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정해진 전자적 방법으로 7.12에서 정한 각 차수별 청구일에 발행하여야 한다.

- 7.9.4.2 전력거래소는 회원사가 7.9.4.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7.9.4.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회원은 즉시 전력거래소에 통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7.9.4.4 7.9.4.1과 7.9.4.3의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그로 인하여 전력거래소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 등 제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한다. 전력거래소는 해당금액을 회원의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입금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력거래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7.10 정산명세서, 통지서, 청구서, 청구요청서 발송방법
- 7.10.1 전력거래소 정산 및 결제담당부서에서 7.6(초기, 최종정산명세서 송부), 7.7(정산금 통지서), 7.9(청구 및 청구요청서)에 의거한 각종 서식 발송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상기자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는 정산 및 결제에 관련된 각종서식의 발송으로 본다.
- 7.10.2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지연, 통신장애, 기타사유로 인터넷 게시가 불가능할 때는 회원 통지함, 팩스, e-mail 중 가장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발송한다.
- 7.10.3 전력거래 참여회원의 거래담당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7.6.1의 자료 를 다운받아 거래내역 확인 및 청구관련 증빙서로 이용한다.
- 7.10.4 전력시장 참여회원의 거래담당자가 전력거래소에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적 문서(EDI)형태로 등록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을 이용할수 있다.[신설 2004.11.30.]
- 7.11 전력거래대금 결제, 정산계좌 등록·변경 및 채권양도 등 <개정 2021.1.1.>
- 7.11.1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자는 매월 4차수에 걸쳐 수행되며 결제일자는 7.12(정 산및결제 일정표)에 따른다. 단, 제4.3.2조 제6항 내지 제9항에 따라 판매사 업자와 발전사업자간 별도의 결제일자를 합의한 경우, 합의된 결제일로 한 다. <개정 2018.12.12., 2022.4.29.> [시행일: 2022.5.1.]
- 7.11.1.1비중앙 급전 발전기만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공문이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전력 거래소는 7.11.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1차~4차 전력거래대금을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4 차에 총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06.30.] <개정 2018.12.12.>
- 7.11.1.2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자는 매월 1회로 수행하며 결제일자는 별표26에 따른다. [신설 2014.11.3.]
- 7.11.1.3예측제도 참여자의 전력거래대금은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1차~4차 전력거래대금을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4차에 총괄하여 월 1회 지급한 다. [신설 2020.10.1.]

- 7.11.1.4<삭제 2024.2.13.>
- 7.11.1.5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초과전력량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은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1차~4차 전력거래대금을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4차에 총 괄하여 월 1회 지급한다. [신설 2025.7.10.]
- 7.11.2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전력거래대금 결제 <개 정 2005.1,21., 2022.5.31., 2025.4.9., 2025.7.10.>
- 7.11.2.1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거래차수별 결제일 1 영업일전 15:00까지 7.9.1.1의 전력거래대금 청구서에 기록된 결제금액을 시장은행에 개설된 해당 회원 정산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 2018.12.12., 2022.5.31., 2025.4.9., 2025.7.10.>
- 7.11.2.2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재생에너지전 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자기의 정산계좌에 결제 금액 입금시 양수동력정산금 등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금액을 차감하여 입금한다.<개정 2005.1.21., 2022.5.31., 2025.4.9., 2025.7.10.>
- 7.11.3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 결제금액 이체지시
- 7.11.3.1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7.11.2.1에서 정한 시간 직후 전력거래대금 결제 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결제대금이 정상적으로 해당 회원 정산계좌에 입금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개정 2005.1.21., 2018.12.12. 2022.5.31., 2025.4.9., 2025.7.10.>
- 7.11.3.2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해당 회원의 결제금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결제일 1영업일전 결제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후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하도록 시장은행에 지시한다.<개정 2018.12.12.>
- 7.11.4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예측제도 참여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거래대금 결제 <개정 2014.11.3., 2020.10.1., 2025.7.10.>
- 7.11.4.1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입금된 총액이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예측제도 참여자,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기타 지급처에 이체되어야 될 총액과 일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제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부결재를 거친후 해당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예측제도 참여자,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기타 지급처에 이체되어야 할 금액을 확정한다.<개정 2014.11.3., 2020.10.1., 2025.7.10.>
- 7.11.4.27.11.4.1에서 이체되어야 할 결제금액이 확정되면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거래차수별 결제일 15:00까지 결제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정산계좌에 이체토

록 시장은행에 지시한다. <개정 2017.12.29.>

- 7.11.4.3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발전사업자 정산계좌에 결제대금 이체시 발전사업 자의 결제금액 총액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전력거 래수수료, 연회비, 양수동력 정산금, 차감사유 발생에 따른 RPS의무이행비용, 배출권 거래비용 및 제4.2.5.7조에 의한 비용을 차감하여 이체한다. <개 정 2010.11.30., 2013.10.1., 2017.12.29.,2020.7.8.>
- 7.11.4.4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계좌에 결제대금 이체시 수 요관리사업자의 결제금액 총액에서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위약금 및 규칙 제4.2.5.7조에 의한 비용을 차감하여 이체한다. [신설 2014.11.3.]
- 7.11.4.4.1 수요관리사업자는 위약금 등 자신이 지급해야할 금액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규칙 7.11.2.1의 규정에 정해진 시간까지 전력거래소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4.11.3.]
- 7.11.4.5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예측제도 참여자 정산계좌에 결제대금 이체시 예측제도 참여자의 결제금액 총액에서 예측제도 참여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연회비 및 제14.5.5.8조에 의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이체한다. [신설 2020.10.1.]
- 7.11.4.6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정산계좌에 결제대금 이체 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결제금액 총액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위약금, 규칙 제4.2.5.7조에 의한 비용 및 차등금액을 차감하여 이체한다. [신설 2025.7.10.]
- 7.11.5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예측제도 참여자의 정산계좌에 결제금액이 이체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차수별(예측제도 참여자의 경우는 4차) 결제일 근무시간 이내에 전력거래 참여회원별 결제금액 이체현황을 출력하여 내부결재를 얻는다. <개정 2014.11.3., 2020.10.1., 2025.7.10.>
- 7.11.6 전력거래대금의 채권양도 및 압류·가압류[신설 2012.5.31.]
- 7.11.6.1전력거래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채권양도담보 등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에한하여 7.11.6.2. 내지 7.11.6.13.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2017.12.29.]<개정 2021.01.01.. 2023.9.26.>
 - 1. 수요반응자원 거래, 공급인증서 거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 채권,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채권을 제외한 전력거래 대금채권 <개 정 2022.12.27., 2023.8.30.>
 - 2. 발전차액지워금 채권
- 7.11.6.2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통지는 회원사 또는 회원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하여야 한다. <번호변경 및 개정 2017.12.29., 2021.01.01.>

- 7.11.6.3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통지는 아래 각호의 통지서 서식에 따른 확정일 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각 서식에 따라 정산계좌를 지정·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1.01.01.>
 - 1. 채권양도 통지(양수인이 1인(1법인)인 경우) : 별지 제42-1호 서식
 - 2. 채권양도 통지(양수인이 다수이거나 신탁사인 경우) : 별지 제42-2호 서식
 - 3. 질권설정 통지(질권자가 1인(1법인)인 경우): 별지 제42-3호 서식
 - 4. 질권설정 통지(질권자가 다수이거나 신탁사인 경우) : 별지 제42-4호 서식
- 7.11.6.4회원사 또는 양수인이 본 규칙을 위반하여 한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흠결을 보완한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질권설정통지서가 도달한 때 비로소 효력이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1.01.01.>
- 7.11.6.5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효력은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질권설정통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1.01.01.>
 - 1. 양수인 또는 양수인의 동의를 받은 회원사가 별지 제43-1호 또는 제43-2호 서식의 채권양도/질권설정해지통지서에 따라 통지한 채권양도/질권설정해지통지가 도달 [신설 2017.12.29.] <개정 2021.01.01.>
 - 2. 회원사의 탈퇴, 합병·분할 등의 변경사유 발생
- 7.11.6.6 흠결이 없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전력거래소에게 도달한 때 회원사의 전력거래 대금 채권과 정산계좌 변경신청 권한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신설 2017.12.29.]
- 7.11.6.7채권양도 통지 후 양수인이 전력거래 대금 정산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별지 제44-2호서식의 정산계좌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정산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번호변경 및 개정 2017.12.29., 2021.01.01., 2022.12.27.>
- 7.11.6.8전력거래소는 채권양도, 질권설정 또는 압류·가압류된 전력거래대금을 공탁하거나 또는 지급에 관하여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번호변경 및 개정 2017.12.29., 2021.01.01.>
- 7.11.6.9전력거래소는 질권실행 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 질권자의 동의 하에 전력거 래대금을 질권설정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 7.11.6.10 질권설정 통지가 제3자의 채권양도 통지 또는 (가)압류명령 보다 가장 먼저 도달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그 질권자의 질권실행 통지가 도달한 때 전력거래대금을 질권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러 채권자 간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 필요시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신설

2023.9.26.1

- 7.11.6.11 질권자의 질권실행 통지시 일부 실행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전력거래소는 최초 1회의 질권실행 통지만으로 피담보채권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전력거래대금을 질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 7.11.6.12 결제일을 경과하여 공탁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1,000원이하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번호변경 및 개정 2017.12.29., 2023.9.26.>
- 7.11.6.13 채권경합시의 판단기준 및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규칙 및 거래소 자체규정에 따른다. <번호변경 및 개정 2017.12.29., 2023.9.26.>
- 7.11.7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 절차 [신설 2021.1.1.]
- 7.11.7.1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은 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채권양도 등 전력거래대금과 관련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사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 7.11.7.2회원사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을 하려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11.7.3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에 동의한 회원사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전력거래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7.11.7.4회원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는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의 형태로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인감(서명), 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전자문서의 누락, 오류, 비식별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시스템 등을 통해 회원사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회원사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7.11.7.5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 7.11.7.67.11.7.3항 및 7.11.7.4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를 전자서명을 한 날로부터 7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및 토요일은 제외)까지 회원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사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력거래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7.11.7.7 회원사는 7.11.7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의 원본을 처리완료일로부터 전력거래기간 동안 보관하고, 전력거래소의 회원 탈퇴 시 전자문서로 제출된

- 원본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7.12 정산 및 결제 일정표
- 7.12.1 정산 및 결제일정표는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와 회원간 의 협의에 의하여 작성한다.
- 7.12.2 7.12.1에서 결정된 정산 및 결제일정표는 매회계년도 개시 20영업일전까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7.13 정산결과 조정(이의)신청 및 처리
- 7.13.1 정산결과 조정(이의)사항 신청
- 7.13.1.1전력거래소에서 수행된 전력거래 정산결과 조정(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문서제출(모사전송방식 포함)을 통해 이의제기 내용, 항목구분, 날짜, 신청자 소속 및 성명 등을 별지 제50호서식으로 전력거래소에 신청하고 접수여부를 확인한다. 단, 문서를 통해 조정(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터넷 장애요인이 제거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정(이의)신청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7.13.1.2전력거래소는 조정(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신청번호를 접수순서에 따라 조정(이의)신청 등록관리부상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7.13.2 조정(이의)신청서 유효성 확인
- 7.13.2.1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조정(이의)신청서 기재 내용, 신청 접수일시 및 현재 전력거래소 자체 정산조정 중인 내용인지 또는 정산결과 이외의 사항인지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이의)신청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 7.13.2.2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가 유효성을 확인하여 접수불가한 조정(이의)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불가사유와 함께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註 : 접수불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불가사유를 설명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7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안내
- 7.13.2.3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접수불가한 조정(이의)신청서와 조정(이의)신청자가 자체철회한 신청서는 각각 "접수불가"와 "자체철회"로 조정(이의)신청등록관리부를 별지 제51호서식에 기술하고 처리를 종결한다.
- 7.13.3 초기정산결과 조정신청
- 7.13.3.1초기정산 결과 조정사항 처리
- 7.13.3.2전력거래결과 초기정산에 대한 초기정산 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신청자는 거래일로부터 18일 이내에 7.13.1에 따라 정산담당자에게 신청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4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7.23., 2014.11.3.>
- 7.13.3.3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초기정산결과 7.13.2에 따라 조정신청 유효성을

확인하고 조정신청 합의된 사항은 최종정산에 반영한다. <개정 2014.11.3.>

- 7.13.3.4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초기정산 금액 변경이 수반되는 관련 회원의 거래담당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 7.13.3.5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관련 회원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한다.
- 7.13.3.6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초기정산결과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자와 초기정산금액에 영향을 받는 관련 회원에게 거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입력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46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7.23., 2014.11.3.>
- 7.13.3.7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초기정산결과 조정신청 합의사항이 최종정산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7.13.3.8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이의사항 처리가 완료되면 조정(이의)신청등록관리부에 "처리종결"로 표기하여 종결한다.
- 7.13.4 최종정산 결과 이의신청 처리
- 7.13.4.1최종정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7.13.1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7.13.1.1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8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3.5.7., 2007.7.23., 2014.11.3.>
- 7.13.4.2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7.13.2에 따라 이의신청 유효성을 확인한다. <개 정 2014.11.3.>
- 7.13.4.3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필요시 관련 회원의 거래담당자가 참여한 이의조 정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협의·조정한다.
- 7.13.4.4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이의신청 합의에 따른 최종정산금 변경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거래일로부터 85일 이내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7.13.5 및 7.13.6.1의 절차에 따라 해당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통지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7.23., 2014.11.3.>
- 7.13.4.6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조정(이의)신청등록관리부(별지 제51호서식)에 "처리종결"로 표기하고 종결한다.
- 7.13.5 조정(이의)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발행
- 7.13.5.1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각 회원의 양식은 별지 제54호~제55호서식으로 조정(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서를 발행한다.
- 7.13.5.2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서 발행번호를 부여한다.

- ◈ 발행번호 부여 형식 : XXX-XX-XXXX-XX
- ㆍ처음 3자리

ISD: Initial Settlement Dispute

FSD: Final Settlement Dispute

- · 다음 2+4자리 : 신청번호(년도-일련번호)
- · 다음 2자리 : 회원코드

01 : 수력원자력, 02 : 남동, 03 : 중부, 04 : 서부, 05 : 남부,

06 : 동서, 07 : 한국수자원, 08 : 한전, 10 : 기타

- · 통지서 발행대상 회원수가 증가할 경우 회원 코드 추가 부여
- 7.13.5.2.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서 발행번호를 부여한다. [신설 2014.11.3.]
 - ◈ 발행번호 부여 형식 : XXX-XX-XXXX-XX
 - · 처음 3자리 : KPX(전력거래소)
 - · 다음 3자리

IDD: Initial DR Settlement Dispute

FDD: Final DR Settlement Dispute

- · 다음 2+4자리 : 신청번호(년도-일련번호)
- · 다음 2자리 : 회원 코드

08: 한전. 10: 수요관리사업자

- 7.13.6 각 회원별 조정(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서 교부 및 변경 정산금 수수
- 7.13.6.1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회원별 조정(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서를 전력거래 소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통지마감일 16:00까지 입력한다.
- 7.13.6.2각 회원은 조정(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서를 확인하고 최종정산에 대한 이의 신청처리결과통지서를 근거로 전력거래소와 거래당사자간 청구서를 발행하 여 통지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대금지급일에 신청처리 결과 변경된 정산 금을 수수한다.<개정 2005.1.21>
- 7.13.6.3조정(이의)신청 처리결과 및 분쟁조정규정에 따른 조치결과 변경 정산금 수수에 따르는 금융비용은 송금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 7.13.7 조정(이의)회의
- 7.13.7.1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조정(이의)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SAC-XX-XXXXA"의 형식으로 회의번호를 부여한다.
 - · SAC: Settlement Arbitration Council의 두문자
 - · 다음 숫자 2+4자리 : 연도별 회의 개최 순으로 부여한 일련번호
 - · 다음 영문자 : 동일건에 대한 회의개최 횟수를 알파벳 순으로 표시
- 7.13.7.2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회의 소집을 위해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관련 회원의 거래담당자에게 적어도 실 근무일 하루전에 통지한다. 촉박한 일정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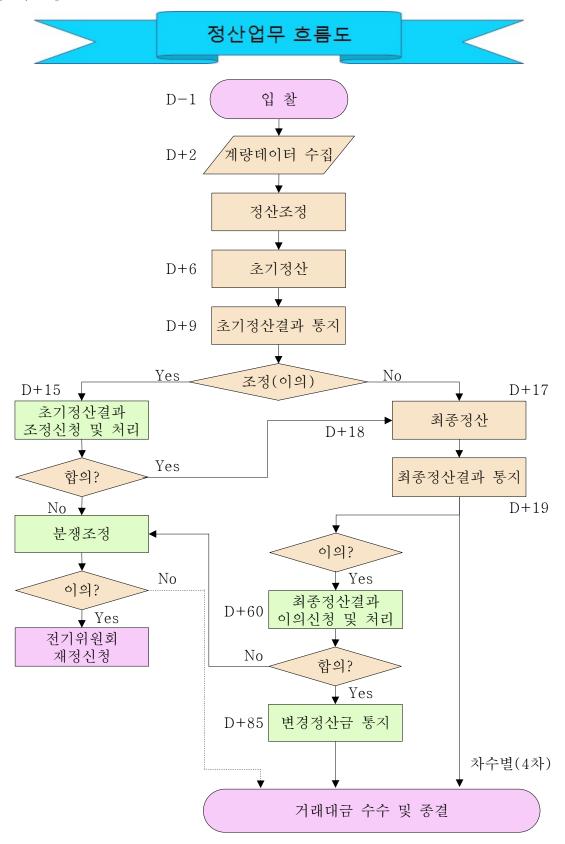
는 결정사항이 긴급한 경우는 즉시 긴급통지로 조정(이의)회의를 소집한다.

- 7.13.7.3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이의신청 내용을 이의조정회의에 참여한 회원의 거래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협의·조정한다.
- 7.13.7.4이의조정회의의 결정은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합의불가" 처리한다.
- 7.13.7.5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이의조정회의에서 협의, 조정된 결과를 이의조정회의록(별지 제5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초기정산의 경우는 거래일로부터 21일 이내, 최종정산의 경우는 거래일로부터 85일 이내에 해당 회원에게 7.13.6.1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기록·관리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해서는 초기정산은 거래일로부터 46일 이내, 최종정산은 거래일로부터 1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7.23., 2014.11.3.>
- 7.13.7.6이의조정회의에서 합의 불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조정(이의)신청등록관리부(별지 제51호서식)에 "합의불가"로 표기하고 확인 일시를 기록하여 종결한다.
- 7.14 <삭제>
- 7.15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및 전기위원회 분쟁조정결과 전력거래 정산 금 변경이 수반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처리한다.
- 7.16 발전소 접속설비의 불가항력적 고장에 대해서는 발전기 고장정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은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7.9.]
- 7.17 정산정정통지[신설 2010.11.30]
- 7.17.1 초기정산결과에 대한 정정통지처리
- 7.17.1.1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초기정산결과 통지 후 최종정산결과 통지 이전에 명백한 정산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 최종정산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정산금액 정정에 영향을 받는 관련 회원에게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통지한다.
- 7.17.2 최종정산결과에 대한 정정통지처리
- 7.17.2.1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최종정산결과 통지 후 명백한 정산오류를 발견하 였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 그 내용을 정산금액 정정에 영향을 받는 관련 회원에게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통지한다.
- 7.17.3 정산금 정정통지서 발행
- 7.17.3.1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7.13.5의 통지서 양식을 준용하여 정산금 정정통지서를 발행한다.
- 7.17.4 정산금 정정통지서 교부 및 변경 정산금 수수
- 7.17.4.1각 회원은 정산금 정정통지서를 확인하고 최종정산에 대한 정산금 정정통지서를 근거로 전력거래소와 거래당사자간 청구서를 발행하여 통지일 이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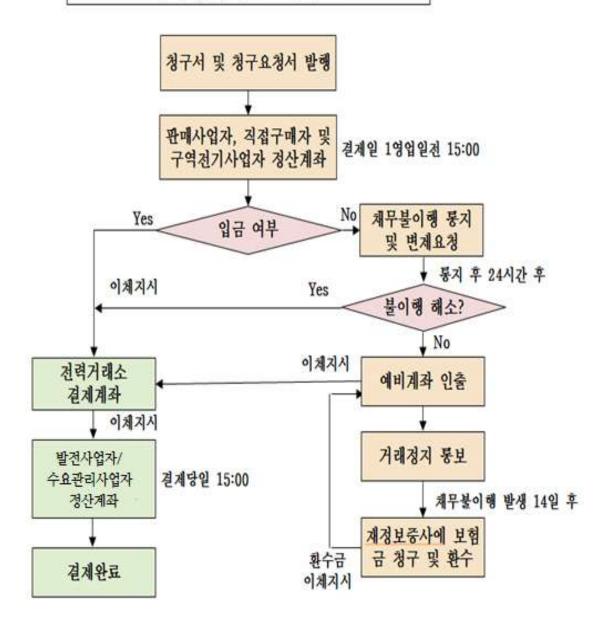
래하는 첫 번째 대금지급일에 정정통지 결과를 반영하는 변경된 정산금을 수수한다.

- 8.0 붙임
- 8.1 정산업무 흐름도
- 8.2 결제업무 흐름도
- 8.3 조정(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붙임 1]



결제업무 흐름도



조정(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